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17/19. 인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인권이사회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겨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인권문서, 예컨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기타 관련 주요 인권문서들을 통해 구체화된 인권의 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상호연관성을 상기하며,

또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것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소속, 재산, 출생 혹은 다른 신분과 같은 어떤 종류의 구분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확인한 것을 상기하며,

나아가, 2006년 3월 15일자 유엔총회 결의안 60/251에서, 모든 인권과 모두의 기본적인 자유 보장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존중되도록 만들 책임이 인권이사회에 있다고 명시한 것을 상기하며,

세계 곳곳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개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행위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1.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세계 전역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적인 법과 관례 및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기록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관련 인권 침해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요청한다,

2. 이 연구에 담긴 사실들을 바탕으로 제19차 인권이사회 회기 중 패널 토론을 마련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적 법과 관례 및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주제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건설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한다,

3.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이 실시하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에 대해, 패널 집단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을 결정한다,

4. 나아가, 인권이사회는 계속해서 이 안건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기로 결정한다.

34차 회의

2011년 6월 17일